

「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 사업」 소상공인 모집 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「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1일
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유통 환경의 비대면·온라인화에 대응,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
- 지원대상 : 온라인진출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
* 단, '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업종'은 신청 불가
- 지원규모 : 300개사
- 지원내용 : 제품 키워드, 배너 광고 등 디지털 광고 지원
- 사업기간 : 선정일 ~ '25. 12. 31까지
- 추진일정



*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신청자격 :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)

○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신청제한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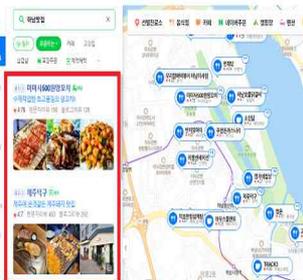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[참고] 참조
휴·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제외 품목	○ 해외 수입제품, 대기업 제품 (※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)
불공정 행위	○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
중복제한 : 아래 9개 세부 사업 중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수혜 가능

중복 대상 사업명	
① (준비) 상품 개선 지원	⑥ (실전) SNS활용패키지
② (준비) 콘텐츠 제작	⑦ (실전)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
③ (실전) 온라인 쇼핑몰 판매	⑧ (실전) 홍보
④ (실전) 라이브커머스	⑨ (도약) 스마트물류
⑤ (실전) 로컬상품관	

□ 디지털 마케팅 지원

- (사전컨설팅)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전략 수립
 - 소상공인 보유제품 및 타겟 고객 등을 분석하여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참여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광고 전략 수립
- (광고지원) 파워링크, 플레이스, 배너광고 3가지 중 택 1(각 유형별 100개사 限)
 - ① 파워링크 광고(검색키워드 기반 노출 광고)
 - 네이버,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
 - 업종 및 키워드에 맞는 광고 전략 수립 지원
 - ② 플레이스 광고(지도 검색 및 지역 기반 광고)
 - 네이버 플레이스, 다음 지도 등에서 지역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
 - 업종별 키워드 최적화 및 가게 정보 세팅 지원
 - ③ 배너 광고(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노출 광고)
 - 모바일 앱 및 메신저(카카오톡 등)에서 타겟 고객층에게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 지원
 - 광고 소재(디자인 및 문구 등) 지원 및 광고 운영 대행

구분	파워링크 광고	플레이스 광고	배너 광고
노출 위치			

- (성과분석) 광고 집행 완료 후 개별 소상공인 광고리포트 제공
 - 광고 집행 후,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업체별 마케팅 전략 공유
 - * 시각화된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진단 리포트 제공
- (교육지원)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실전 교육 진행

4

신청 및 접수

신청기간 : '25. 3. 11(화) ~ (연중 수시 접수)

* 선정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 가능

신청방법 : 판판대로(<https://fanfandaer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제출서류 : 소상공인 확인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상품 기술서 기타 가점서류*(우대 및 할당지원 참조) 등

[제출서류 목록]

구분	내용	발급처
사업자등록증	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-
소상공인확인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국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	국세청 홈택스
지방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	민원24
상품기술서	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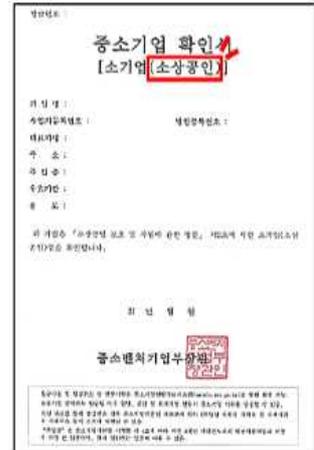
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3/1 경우, 유효기간이 3/1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** 회원가입 사업자번호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

*** 가점서류는 [별첨 1]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

[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]

-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 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 -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 - 확인서 발급 :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접속 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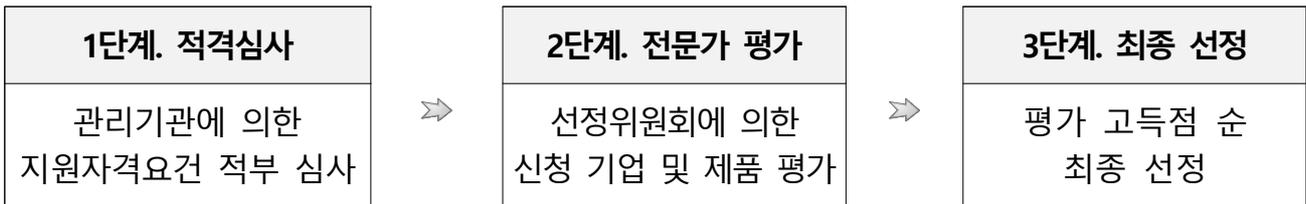
- * 발급문의처
 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 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

5

참여 기업 선정

□ 평가 및 선정 절차

- 평가 절차 : 총 2단계 심사·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

□ 심사 평가 방법 및 내용

- (적격심사) :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
* 필수서류 : 소상공인 확인서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상품기술서

- (전문가 평가) :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 (5명 이내 구성)

유의사항
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의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사업 선정 후 광고 유형 및 상품 변경은 불가하며, 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(연락두절, 서류제출 거부 등)
-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.

문의처 :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역량지원팀(02-6678-9867)

별첨 1**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** 선정 우대

- 우대사항 :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	해당 시 +5점
② '22~'24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화체육관광부(문체부)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③ '22~'24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해당 시 +3점

 신청방법 및 증빙자료

- 신청방법 : '판판대로'를 통해 사업신청 시 우대 항목을 선택하고,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
- 증빙자료

구 분	증빙자료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백년가게, 백년소공인 확인서 ○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○ 브랜드K 확인서
② '22~'24년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-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
③ '22~'24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-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

참고

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용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>

예외규정에 따라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,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
단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0조(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)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(부가세 포함) 합계액(가격합계액)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. 단,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
- ③ 상기 ①,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·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 불가